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제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07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2.

발 의 자:장제원·이 용·성일종

김정재 · 이명수 · 이채익

구자근 • 이종배 • 안병길

金炳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 시 1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.

한편, 통계청의 연령별 농가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총 농가인구는 454만명 감소('89년 678만명 → '19년 224만명)하고,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34.7%p 증가('89년 11.9% → '19년 46.6%) 하는 등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,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2항제2호 중 "15억원"을 각각 "30억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 	개 정 안
제18조(기초공제) ① (생 략)	제18조(기초공제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	2
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	
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	
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	
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	
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	
용하지 아니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	2
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	
이하 이 조에서 같다]상속:	
영농상속 재산가액(그 가액	
이 <u>15억원</u> 을 초과하는 경우	<u>30억원</u>
에는 <u>15억원</u> 을 한도로 한다)	<u>30억원</u>
③ ~ ⑪ (생 략)	③ ~ ① (현행과 같음)